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7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24. 4. 15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	서울특별시 마포구	
1	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	구청장
	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"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"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O 제출자: 구청장

O 제안일 : 2024. 4. 2.

O 회부일: 2024. 4. 3. (의안번호: 24-43)

2. 제안이유

자문단 역량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O 교육 연수 등 지원근거 신설(안 제11조 신설)

4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-「지방자치법」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
 - 입법예고 : 2024. 2. 29. ~ 3. 20.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자문단 역량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자문단 운영에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분과위원회 남발이나 수당 주기식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 는 등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미래성장자문단은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마포구의 신성장 동력 또는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공정성이 보장되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 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 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[시행 2023.12.14.] [대통령령 제33966호, 2023. 12. 14., 일부개정]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- 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- 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